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12일

아라1동장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신 *찬	신 *찬 1996-01-05	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(당하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5-29